



공 보 해 남 소 식

2017년 7월 3일(제406호)

HAENAM NEWS

◆ 군정목표 ◆

힐링시티 해남건설로
군민행복시대 구현

◇ 군정방침 ◇

농수산업 1조원 시대 실현
주민감동 1류 복지서비스 증진
치유여행 1번지 문화관광 육성
인재육성 1등 교육환경 조성
창조적인 1품 행정 추진

발행인: 해남군수 발행처: 기획홍보실 주소: 전남 해남군 해남읍 군청길 4 해남군청
대표전화 061)530-5462 팩스 530-5574 홈페이지 <http://www.haenam.go.kr>
◎ 본지에 실린 공고·고시·조례 등은 공문서로서 효력을 갖습니다 ◎

공 고

- ◎ 해남군공고제2017-1159호 ----- 1
- ◎ 해남군공고제2017-1166호 ----- 2
- ◎ 해남군공고제2017-1167호 ----- 4

7

10

해남군공고제2017-1159호

전문건설업 행정처분 공고

건설산업기본법 제81조(시정명령) 제9호에 따라 정당한 사유없이 제 49조 제1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않아 같은 법 제82조(영업정지 등) 제 1항 제5호 규정에 따라 시정명령 지시에 따르지 아니한 업체에 대한 행정처분 사항을 같은 법 제85조의3(등록말소 등의 공고)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7. 6. 27.

해 남 군 수

1. 전문건설업 행정처분 내역

상 호 (대표자)	영업 소재지	업 종 (등록번호)	처분근거 (사 유)	처분내용 (처분기간)
(주)백화산업 (배 * 성)	전남 해남군 북평면 불무당길 7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대구남구2007-10-01) 토공사업 (경북예천200-02-07)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대구남구2008-13-04)	○실태조사 자료제출 미이행으로 시정명령 지시에 따르지 않음 (제1차)	○영업정지 1개월 (2017. 6. 27. ~ 2017. 7. 26.) ○영업정지종료 전까지실태조사 자료제출

2. 공고기간: 2017. 6. 27. ~ 2017. 7. 11.(15일간)

3. 처 분 일: 2017. 6 27.

4. 법적근거: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영업정지 등) 제1항 제5호

5. 기타

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제36조의 3에 따라 행정처분사항을 건설업 등록행정시스템(<https://con.kiscon.net>) 및 해남군청 홈페이지에 공하였으며, 대한전문건설협회 및 전문건설공제조합에 통하였습니다.

나. 이 처분에 불복이 있는 경우에는 이 처분서를 송달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전라남도청 또는 해남군청 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 행정소송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기타 사항은 해남군청 지역개발과 도시계획팀(☎061-530-5445)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해남군공고제2017-1166호

보상계획 열람 공고

해남군 고시 제2017-82호로 사업시행 인가 고시된 『북일 용일~용원간 농어촌도로 확포장공사』 구간에 편입되는 토지 및 지장물, 영업권에 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5조(보상계획의 열람 등) 규정에 의거 손실보상계획을 다음과 같이 열람 공고하오니 토지 및 물건, 영업권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권리자)은 토지 및 물건조서, 영업권조서 내용을 기간내에 열람하시고 이의가 있을 경우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7년 6월 30일

해 남 군 수

1. 열람기간 및 장소

가. 열람기간 : 2017. 6. 30. ~ 2017. 7. 14.(15일간)

나. 열람장소 : 전라남도 해남군청 안전건설과 토목팀(☎061-530-5488)

북일면사무소 총무팀(☎061-530-3263)

다. 보상내역의 세부목록은 해남군 안전건설과 토목팀 및 북일면사무소 총무팀에 비치하며, 기간 중 세부 목록을 열람하시고 이의가 있으신 분은 위 공고 기간 내 서면으로 이의 신청하시기 바라며 열람기간 경과 시에는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법률 제15조 제3항)

2. 사업개요

가. 공 사 명 : 『북일 용일~용원간 농어촌도로 확포장공사』

나. 시행위치 : 전남 해남군 북일면 용일리 624-1일원(리도202호선)

다. 사 업 량 : L=0.391km, B=7.5m

라. 시행기간 : 2017. 06. 08. ~ 2017. 12. 04.

마. 시 행 자 : 해남군수

3. 보상대상 : 토지 및 물건조서 : 개별통지와 안전건설과, 북일면사무소에 비치

4. 보상시기 및 절차 : 감정평가 및 보상금 산정 후 개별통지 예정 (2017년 8월)

(※보상시기는 보상계획공고 후 관계 법률상의 절차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부득이하게 변경될 수 있습니다.)

5. 보상방법 및 절차

- 가. 보상금액은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68조에 의거 3인(시·도지사
와 토지소유자가 모두 감정평가업자를 추천하지 아니하거나 시·도지사 어느 한쪽이
감정평가업자를 추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2인)의 감정평가 업체가 평가한 금액을 산술
평균치로 결정하며, 보상협의 후 현금(통장)으로 보상금 지급.
- 나. 같은법 제68조 제2항에 의거 토지소유자가 감정평가(1인)을 추천하고자 하는 경우 당해
보상대상토지면적의 2분의 1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와 대상토지의 토지소유자 총수
의 과반수의 동의를 받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보상계획의 열람기간 만료
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제출하시면 감정평가업체 1인을 추천할 수 있습니다.
- 다. 보상절차 : 보상계획공고 및 열람 → 감정평가 및 보상금 산정 → 손실보상 협의요청
①협의(계약체결시) → 소유권이전 → 보상금지급 → 소유권이전
②협의불성립 → 수용재결신청(전라남도) → 수용재결신청서 열람공고실시(해남군)
→ 수용재결 심의(전라남도) → 보상금 공탁 → 소유권이전

6. 의견서 제출

- 가. 토지등소유자 및 관계인은 **열람공고 기간 내**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 나. 의견제출처 : 해남군청 안전건설과

7. 그 밖의 사항

- 가. 토지등소유자와 관계인의 주소가 변경된 경우에는 해남군청 토목팀으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 나. 보상계획 공고 통보문은 토지등소유자에게 개별 통지할 계획이며, 미수령자에 대하여는
이 공고로 갈음하며, 조서내용에 포함되어 있더라도 추후 보상대상이 아니라고 판단될
경우에는 보상대상에서 변경 또는 제외 될 수 있습니다.
- 기타사항은 해남군청 안전건설과 토목팀(☎061-530-5488)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해남군공고제2017-1167호

해남군 공인 신규등록 및 폐기 공고

해남군공인조례 제6조 및 제10조에 따라 신규 등록과 폐기내역을 동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7. 7. 3.

해 남 군 수

1. 등록 및 폐기 사유: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명칭 변경
2. 등록공인 사용일 및 폐기 연월일: 2017. 7. 3.(월)
3. 등록 및 폐기 공인 인영

등록			폐기		
공인명	인영	규격(cm)	공인명	인영	규격(cm)
해남군총무과 일상경비출납원		1.8 정방형	해남군행정지원과 일상경비출납원		1.8 정방형
해남군재무과 일상경비출납원		1.8 정방형	해남군세무회계과 일상경비출납원		1.8 정방형
해남군농정과 일상경비출납원		1.8 정방형	해남군친환경농산과 일상경비출납원		1.8 정방형
해남군관광지 관리사업소 일상경비출납원		1.8 정방형	해남군땅끝관광지 관리사업소 일상경비출납원		1.8 정방형
해남군관광지 관리사업소장		2.0 정방형	해남땅끝관광지 관리사업소장		2.0 정방형